

Safety Main News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 연말까지 국민 안전신문고 설치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가 안전관리체계가 개편되는 과도기에서 자칫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는 유해·위험요소의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의 조치 및 결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재난 대피 요령과 같은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을 '자연 재해', '사회 재난', '신종 재난'까지 총망라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접수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분석, 보수·정비,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할 방

침이다.

또 정부는 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지원도 추진기로 했다.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 혁신위원회' 구성

산업현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산업안전 혁신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등 3개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3개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노사정위 분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인 산업안전과 공공부문 발전 등에 대한 노사정의 지혜를 모으고 노사정 대타협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먼저 '산업안전 혁신위원회'는 노민기

전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박두용 한성대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안전문화의 정착확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확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산재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개별실적요율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특례 제도다.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된 것이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 총 공사실

적 40억 이상)사업으로 규정돼 왔지만 이번에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약 7만8000여 개 사업장이 제도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들 가운데 6만9000여 개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8500여 개 사업장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했다"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고령자 등 재해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보험료 할인액에 비해 공상처리 비용이 몇 배 더 소요된다"라며 "보험료 인상보다는 입찰제한, 사업장감독 등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韓·日 안전보건 협력체계 강화

재해예방과 안전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지난 1964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재해예방단체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기술지원 및 연구, 근로자 건강증진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와 1998년부터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해 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교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히데끼 세키자와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과정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안전보건에 대한 노하우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적 경험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양국의 안전보건분야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참고로 CRPS는 신체의 외상 또는 중추 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미국 의사협회(AMA)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에 따라 CRPS를 진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 의사협회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기준으로 CRPS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엔 진단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CRPS 기준은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발한이상, 부종, 운동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 4개 범주로 나뉘어 판정된다. 만약 환자가 3가지 범주에서 1가지 이상의 증상(환자가 지각하여 느끼는 주관

적 상태)을 느끼거나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환자 또는 의학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진찰하였을 때 보이는 상태)가 있는 경우 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CRPS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에서 72.6%로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의 기준에 따라 불승인된 산재근로자가 재신청을 하면 개선된 진단기준으로 재판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해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인재, 13명 중형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법원이 관련자들에 엄한 처벌을 내렸다.

지난 9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부는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13명에 대해 모두 금고와 징역 등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모(43세, 건축사) 씨와 장모(44세, 건축구조기술사) 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



지난 9월 12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크레인과 포크레인이 방파제 4m 아래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했다. 또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서모(51세, 시공사 현장소장)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회사 대표 임모(55)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추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리조트 직원인 김모 씨(58세)와 이모(53세) 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체육관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지붕에 쌓인 눈을 제거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산재보험요율 대상 범위 확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64년부터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 제도를 도입·시

행해 왔다.

하지만 제도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건설업 공사실적 40억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도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건설업 2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인천 연안부두서 작업 중 크레인·포크레인 추락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쯤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크레인과 포크레인이 방파제 4m 아래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포크레인을 해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크레인과 포크레인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크레인에 적재돼 있던 경유와 유압유가 해상으로 유출돼 유흡작제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라며 “이와 함께 밀물 때 기름이 추가로 해상에 유출될 것을 대비해 오일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